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 번호	4392
----------	------

2025.12.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제출자: 2025. 11. 10.(월) 광양시장

나. 회부일: 2025. 11. 10.(월)

다. 상정일: 2025. 12. 4.(목)

-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원안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취지

-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시도,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에 다른 도로·통로·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 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안 제3조)
- 연결허가의 신청 등 (안 제4조)
-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안 제6조)
-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안 제7조)
- 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안 제8조)
- 시설물 설치 기준 (안 제9조 ~ 제13조)

3.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시도·군도 및 도시계획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시설을 연결할 때 필요한 허가기준과 절차·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 도로연결 기준을 명시해 민원 처리의 일관성과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도로법 등)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원안의결(출석위원 7명)

6.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붙임: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7.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8.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 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국도 및 지방도,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법 제17조에 따른 군도·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중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안의 도로와 동지역 안의 도로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교통사고가 현저히 우려되는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려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 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7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시장에게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7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

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5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써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

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제8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원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9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10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

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側溝)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2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자형 콘크리트추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3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4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울타리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 제15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 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도로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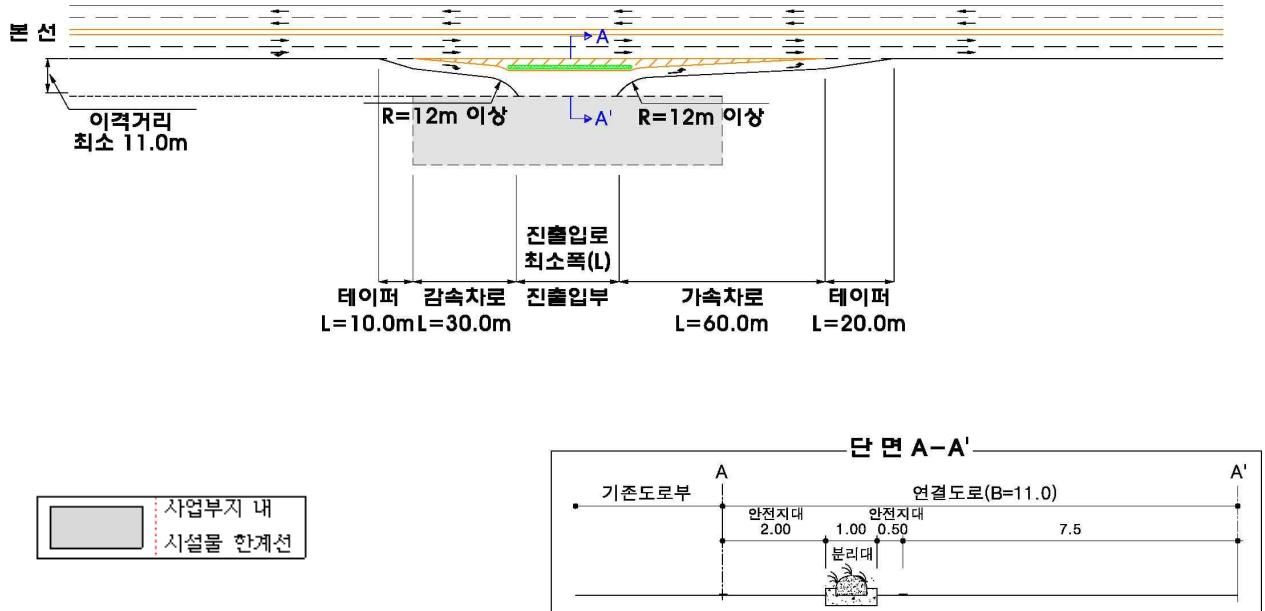
도 면 명	작 성 요 령
위 치 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 면 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점용면적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연속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점용지 경계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導流化施設: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 테이퍼,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종 단 면 도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 [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 단 면 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 조 물 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 대 공 사 도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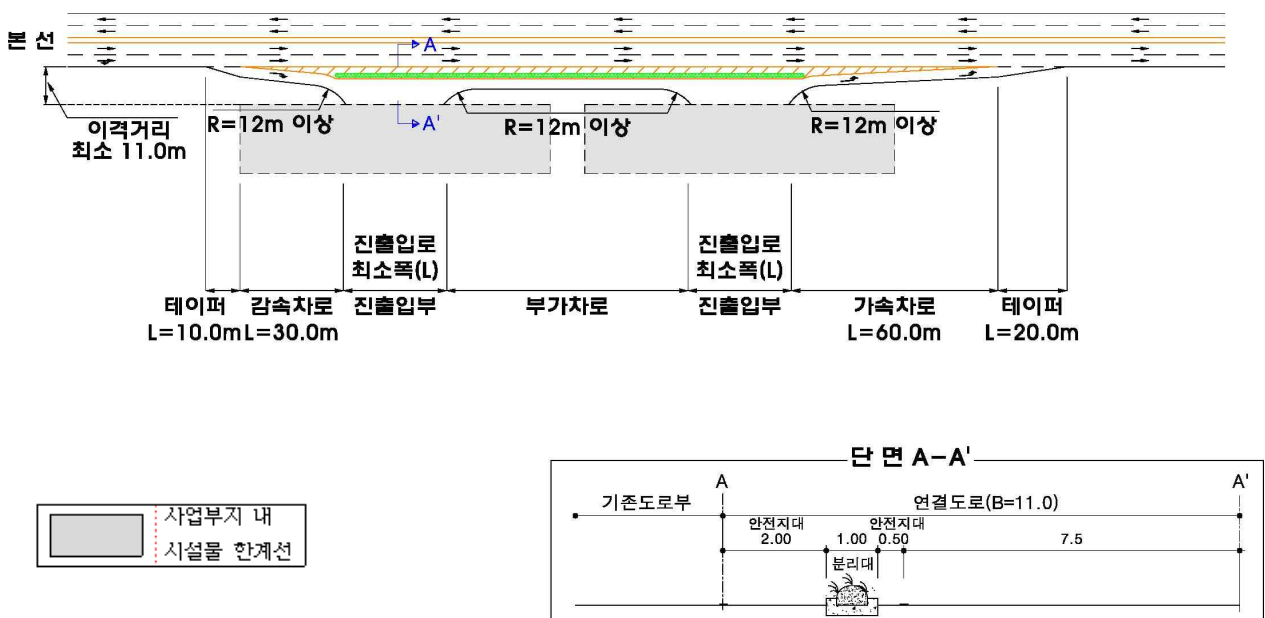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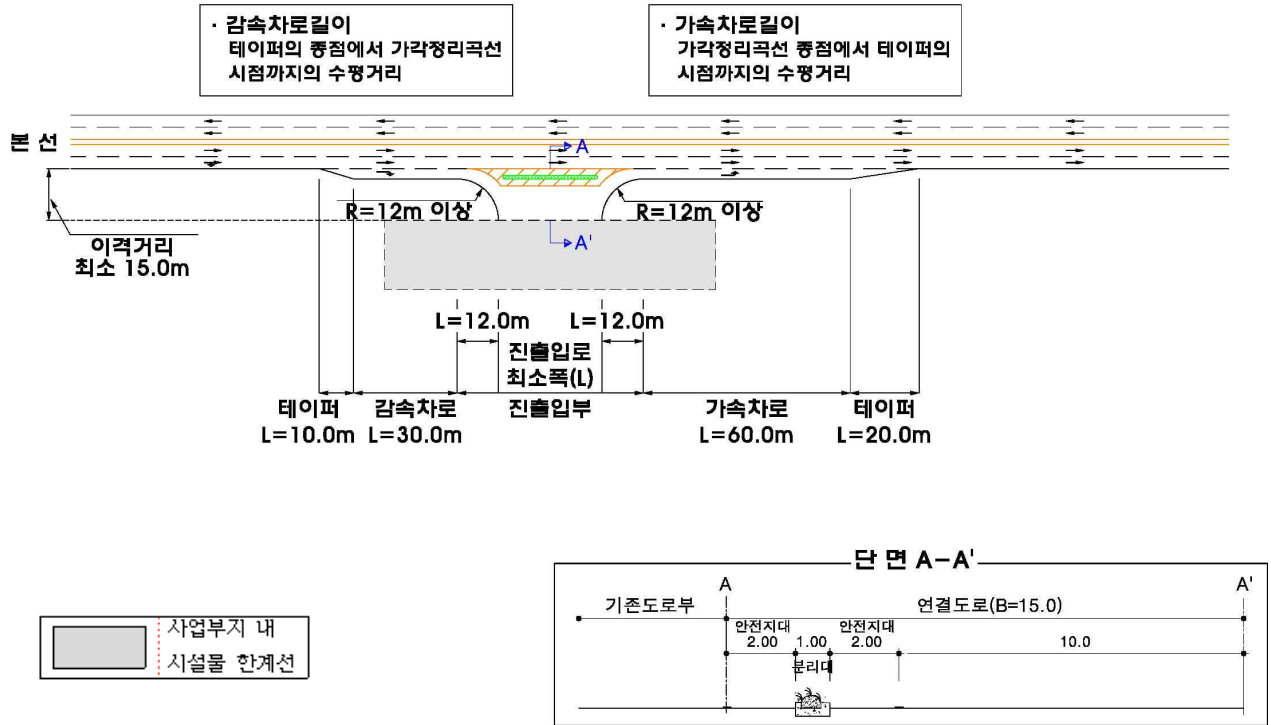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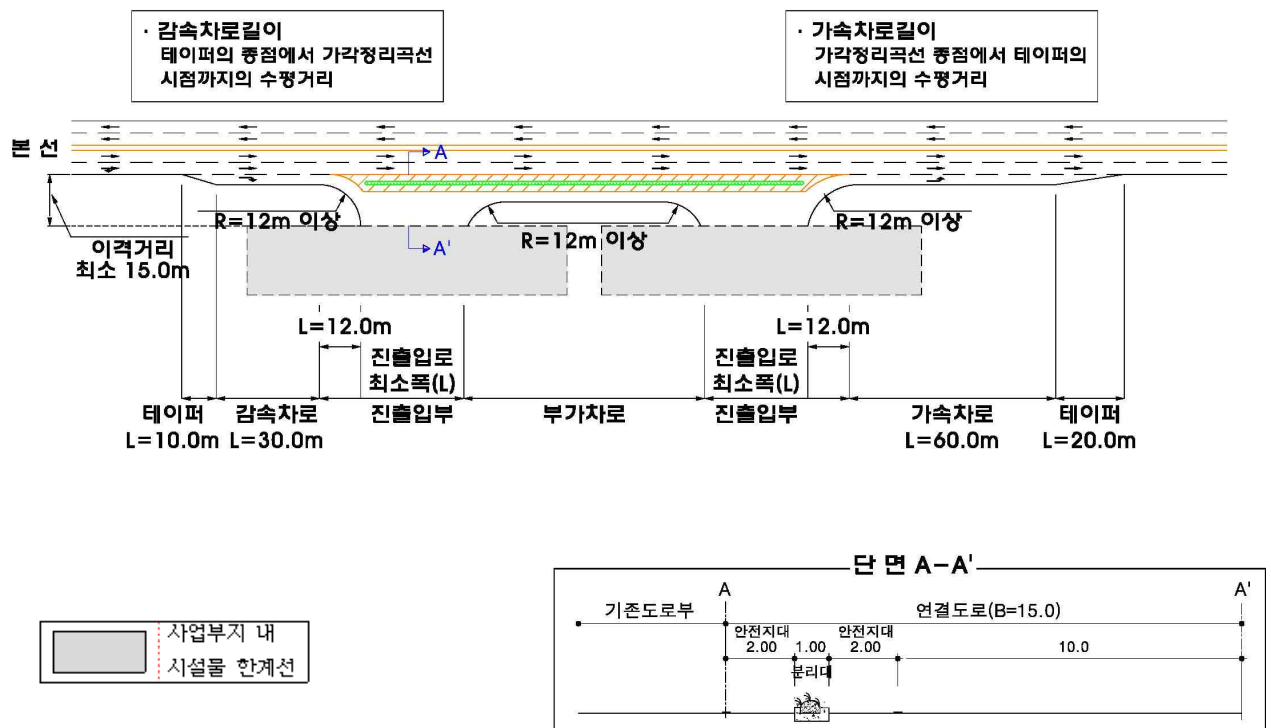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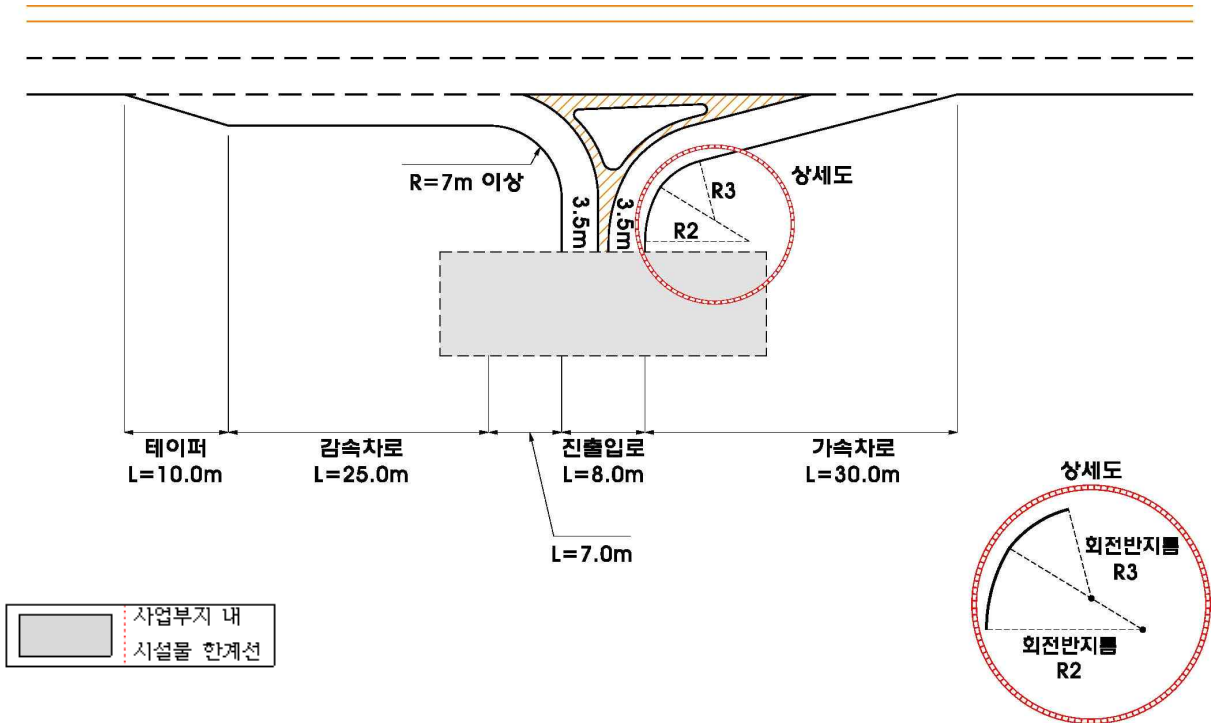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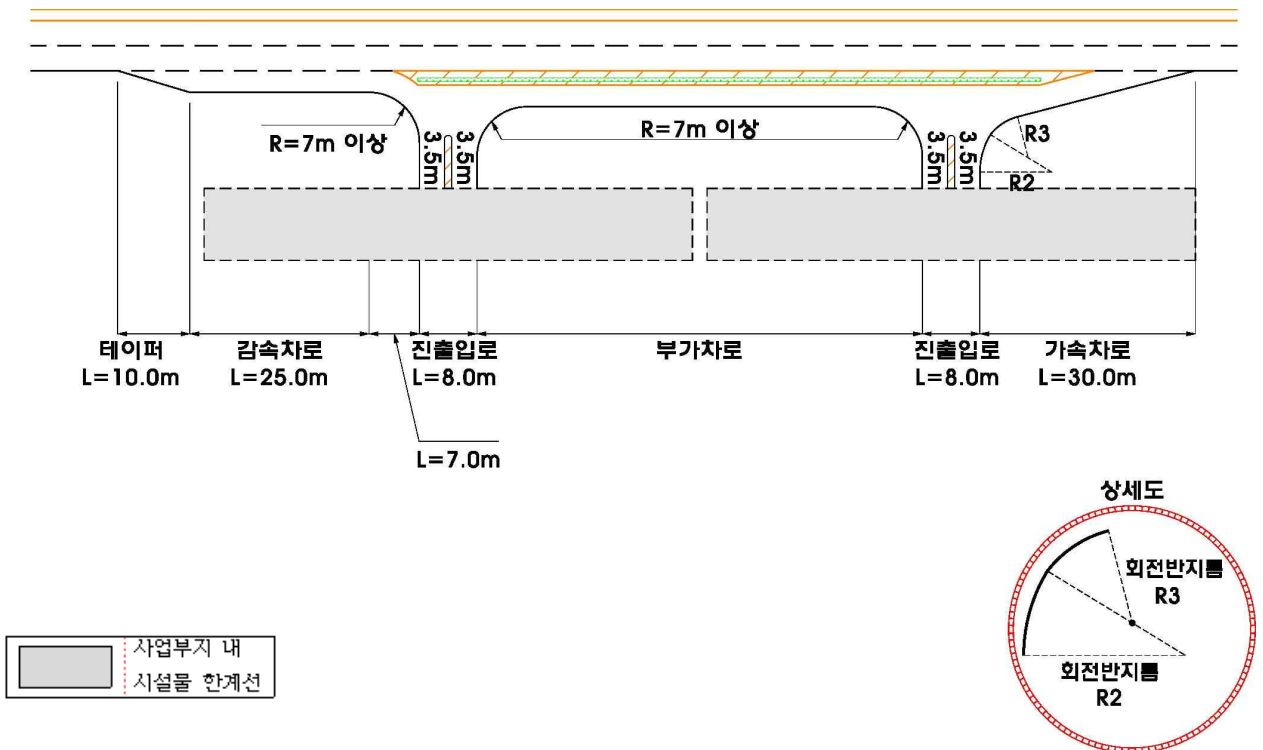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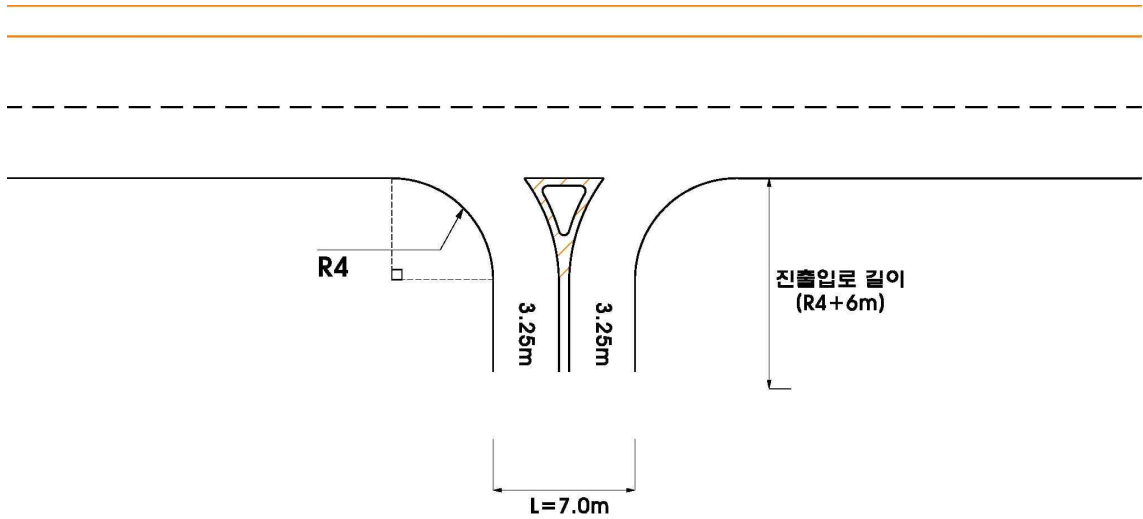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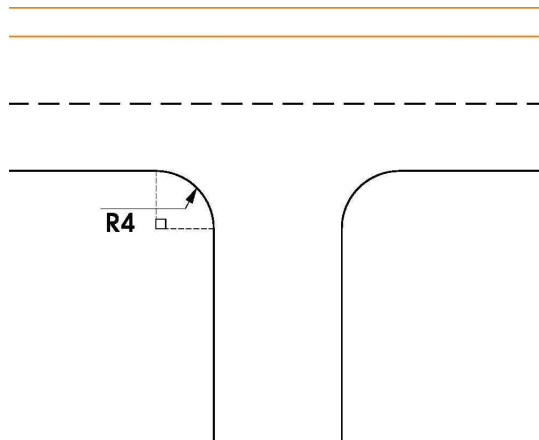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R_4) 5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곡선 반지름(R_4) 3미터 이하인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 은 곡선반지름, L 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내 건축한계선 등 본선 차량 통행의 시야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20m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0m로 한다.

가. 별표 5 제1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나. 별표 5 제2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3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5.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섬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6.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_2 , R_3 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가속차로의 길이(미터)	R_2 (미터)	R_3 (미터)
30	10	7
25	7	5
20	7	5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7조제1호 관련)

(단위: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 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7조제3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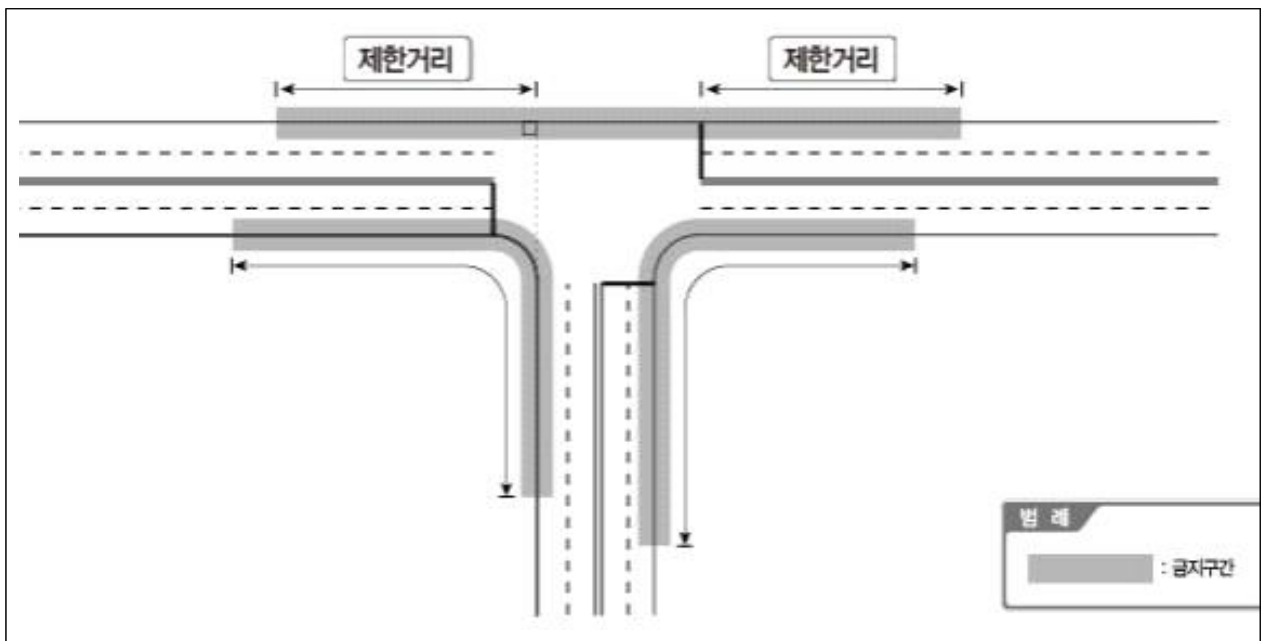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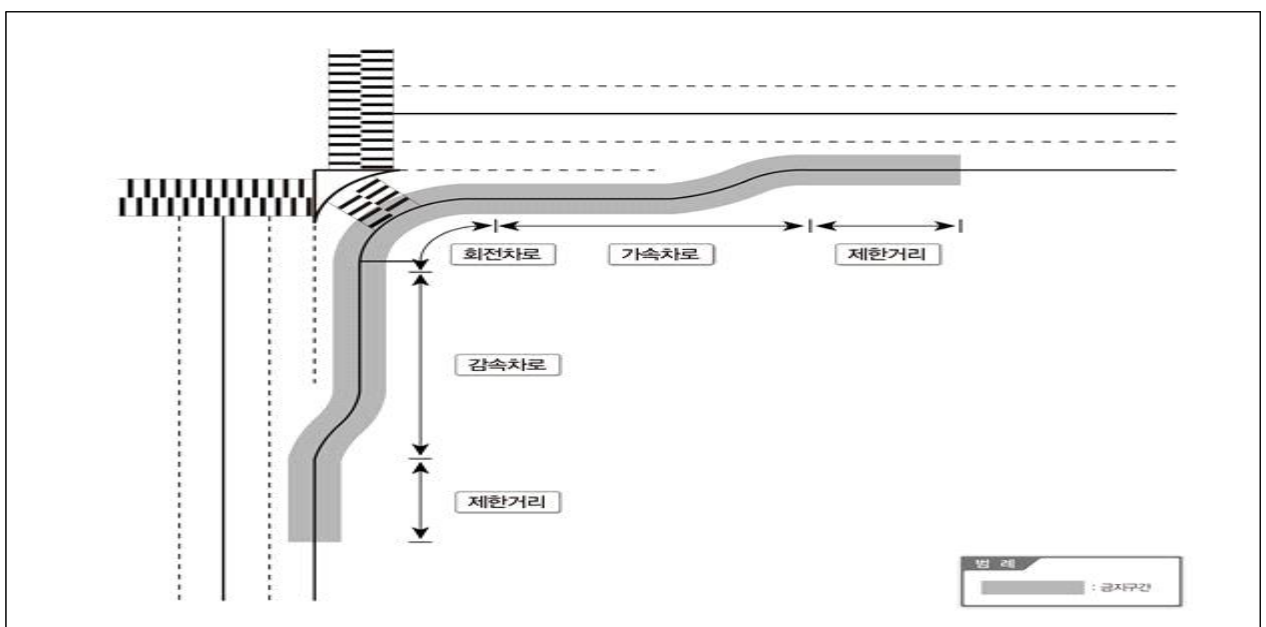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감속차로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10	20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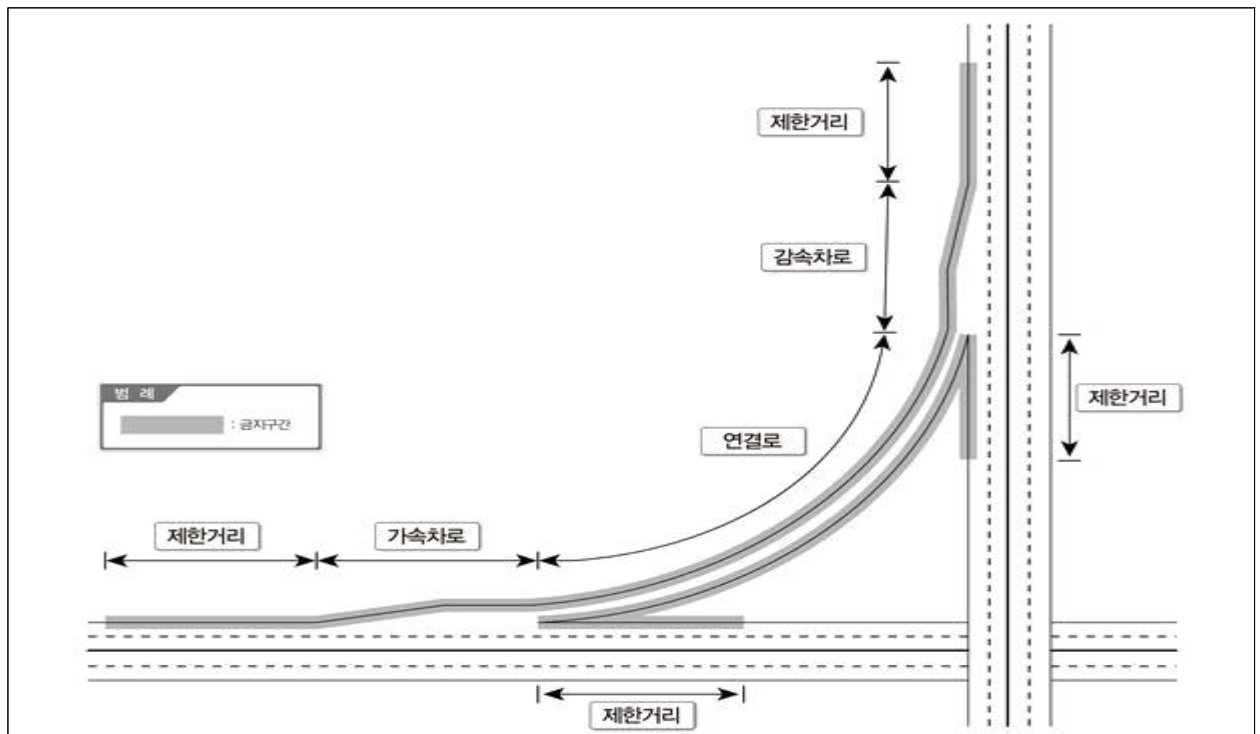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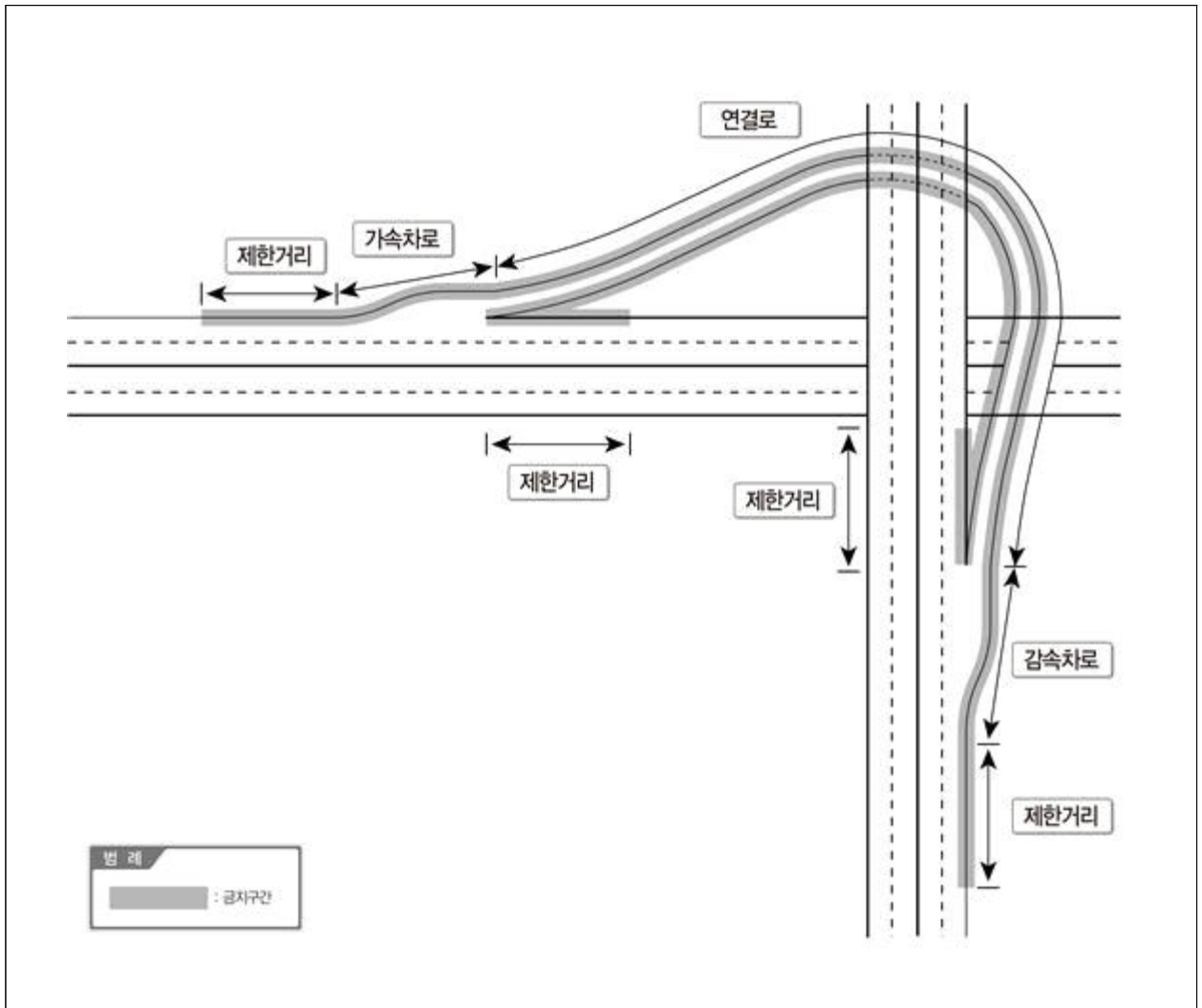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9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공단 진입로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2) 휴게소 및 주유소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4) 사도·농로·마을 진입로 또는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교 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6) 주차장·건설기계 주기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 ·관람시설·집회시 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7) 공장·숙박시설· 업무시설·근린생 활시설 및 기타시 설	2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20가 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21가구 이상 100 가구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9) 농어촌 소규모 시 설(소규모 축사 또 는 창고 등) 및 태 양광 발전시설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나. 측도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가목1) 및 2)	-	10	3.5	15	5
2) 가목3)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3) 가목4)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4) 가목5)부터 7)까지	5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51대 이상	10	3.5	15	5
5) 가목8)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101가구 이상	10	3.5	15	5
6) 가목9)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다. 적용기준

-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 3) 가목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왕복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 5) 가목4)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 6) 가목5)부터 7)까지 및 나목4)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2) 휴게소 및 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4) 사도·농로·마을 진입로 또는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교 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40 (3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6) 주차장·건설기계 주기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 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 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7) 공장·숙박시설· 업무시설·근린생 활시설 및 기타시 설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30	10	60	20
	100가구 이하	(20)	(10)	(40)	(20)
	101가구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 설(소규모 축사 또 는 창고 등) 및 태 양광 발전시설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나. 측도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가목1) 및 2)	-	10	3.5	15	5
2) 가목3)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3) 가목4)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4) 가목5) 및 6)	3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31대 이상	10	3.5	15	5
5) 가목7)	5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51대 이상	10	3.5	15	5
6) 가목8)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101가구 이상	10	3.5	15	5
7) 가목9)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다. 적용기준

- 1) 가목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왕복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 3) 가목5)부터 7)까지 및 나목4)·5)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신청 내용	① 연결 목적		
	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연결 신청 장소		
	③ 사업부지 장소		
	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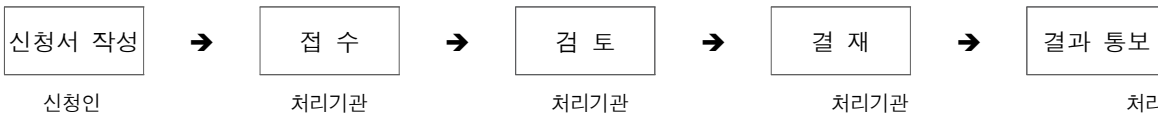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신청인	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수수료 : 없음
제출서류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	
유의사항	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3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신청 내용	① 허가번호		당초 허가기간
	② 연결 목적		
	점용장소·점용면적 (m ²)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연장 사유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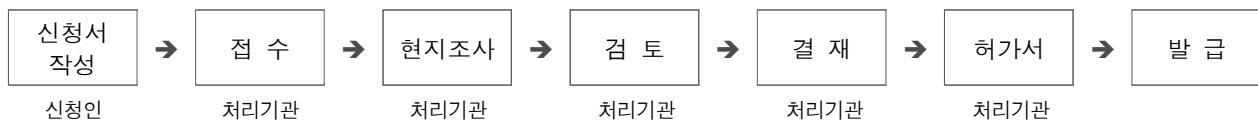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별지 제4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신청 내용	① 허가번호		허가기간
	② 연결 목적		
	점용장소·점용면적 (m ²)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변경내용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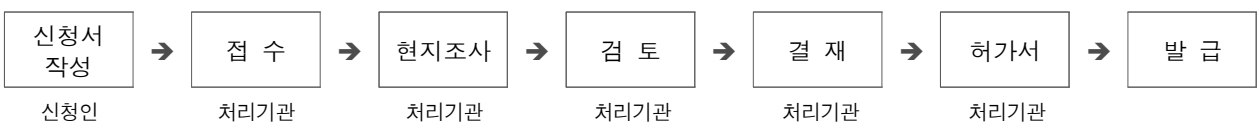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내용 관계 도서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별지 제5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사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결 개요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의 연결지점
	사용 목적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시공물량				미시공물량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현황조사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